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일 시 : 2013년 4월 5일(금)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CONTENTS

사회 : 이상민 강령정책분과위원장(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발제문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1

한국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21

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43

토론문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79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87

- 이인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97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발 제 문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경제정책 비전과 과제

공생적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

김 형 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hkim@knu.ac.kr

2013. 4. 5

민주통합당 전문가-국회의원 간담회

목 차

I. 머리말

II. 공생적 시장경제: 새로운 경제질서

1. 공생적 시장경제
2. 공생적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정양식

III. 공생적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정책 의제

1. 신진보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 지식주도경제: 금융주도경제를 넘어서
3. 상향식 경제학: 하향식 경제학을 넘어서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과 참가적 노사관계
5. 경제안전망과 사회안전망

IV. 맺음말

I. 머리말

-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신진보주의 지향
 - 양극화가 아니라 동반성장
 - 격변성이 아니라 안정성: 거시경제
 - 위험이 아니라 안전: 삶과 경제
-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 21세기 발전 비전
 - 경제발전, 사회발전, 인간발전
- 공생적 시장경제 (Symbiotic Market Economy)
 - 공생 (Symbiosis):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 공생: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의 핵심 개념

II. 공생적 시장경제: 새로운 경제질서

시장경제의 두 측면

- * 자유-평등-호혜 ('freedom-equality-reciprocity')
- * 억압-불평등-수탈 ('oppression-inequality-exploitation')
- 시장에서의 권력비대칭성과 정보비대칭성 정도에 따라 시장경제의 두 측면의 강약 결정
- 특히 시장에서의 권력비대칭성이 문제

- 시장에서 경제주체간 권력이 비대칭적일 경우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를 억압, 수탈 가능
- 시장에서 경제주체간 권력이 동등하면 자유-평등-호혜의 측면이 우월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주체간 공생 실현가능
- 시장에서의 단체교섭과 집단거래를 통해 공생 실현
 - 노사간 단체교섭: “Win-Win Bargaining”
 - 대기업-중소기업간 집단거래: 단가협상
 - Profit sharing과 Rent Sharing

공생적 시장경제 (Symbiotic Market Economy)

-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권력으로 서로 경쟁하고 교섭하며 협력하는 시장경제
- 인간이 자연과 공생 하는 시장경제
- 자유와 평등과 호혜가 실현되는 시장경제
- Market Economy for All

공생적 시장경제 실현 조건

-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와 집단협상과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 공생적 시장경제에 필수
- 경제주체간의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개입 필요
 - 노동3권 보장,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 중소기업의 집단거래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고용보호와 사회보호(보편적 복지를 통한)
- 경제주체간 공정경쟁과 상호협력:
공생적 시장경제의 행동규범

- 호혜(reciprocity): 공생적 시장경제의 핵심요소
- 생태계 보호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 또 하나의 핵심요소
- 경제체계내의 경제주체간의 공생과 경제체계와 생태계간의 공생 필요
- 거시경제적 안정성 실현: 시장경제에 고유한 격변성(volatility)이 취약계층의 빈곤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
- 시장경제의 격변성을 줄이고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개입 필수적

공생적 시장경제의 원리

세가지 구성원리

1.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2. 협력경제 (cooperative economy)
3. 청정경제 (clean economy)

- * 성장잠재력 창출
- * 사회통합 실현
- * 생태계 보전

- 이 세가지 원리가 실현될 때 공생적 시장경제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선진경제가 될 수 있다.

1.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 창의성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경제
- 창의성에 기초한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

창조경제의 원천

- 상상력을 높이는 교육
-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철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비판
- 학문융합
- 생산현장에서의 인문학과 예술의 결합 (Steve Jobs의 혁신론)

창조경제의 원천

- 개인의 자율성과 분권시스템
 - 지역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 창조경제의 사회문화적 조건(Florida, 2002)
 - 이질성(heterogeneity)이 창의성의 원천
cf. 게이 지수, 도가니 지수, 보헤미안 지수
- * 보편적 복지 시스템
- 개인들이 창조적 마인드 갖게 함(생활보장속 개성 발휘)
 - 개인들을 Risk-taker로 만듦(실패 걱정없이 모험적, 혁신적 행동 가능하게 함)
- * 지식네트워크: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의 참가

2. 협력경제 (Creative Economy)

-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경제
- 공생적 시장경제의 중심 원리

협력경제의 원천

-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축소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신뢰와 협력이 존재하는 지역사회관계 (Putman, 1995)

협력경제의 원천

- 노사간 숙련교섭 (skill bargaining) 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파트너십
-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
- 도농간의 자원순환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극복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3. 청정경제 (Clean Economy)

-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방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공생관계를 가지는 경제
- 녹색경제 (Green Economy)
- 21세기 청정경제는 저탄소경제 (low-carbon economy): 지구온난화 억제 위한 CO2 감축 계획 실행
- 녹색기술: 탄소의존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기술
- 에너지 전환: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저탄소경제 실현 위한 제도설계

- 탄소세(carbon tax) 도입
- 탄소배출권 거래(cap-and-trade policy)
- 전력공급시스템 전환 : high-carbon centralized unilateral network로부터 low-carbon decentralized bilateral network로 (Morotomi Asaoka, 2011)
- ‘Cradle to Cradle’ 원리 실현: 생태효율성 제고 (McDonough & Braungart, 2002)

* 공생적 시장경제 실현 위한 3대 투자

- 지식투자(knowledge investment)
-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 녹색투자(green investment)

* 공생적 시장경제 실현 위한 3대 가치관

- 자율(autonomy)
- 연대(solidarity)
- 생태(ecology)

공생적 시장경제의 3대부문과 조정양식

- * 공생적 시장경제의 3대 부문
 - 사적 경제 (private economy)
 - 공공 경제 (public economy)
 -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 * 공생적 시장경제의 조정양식
 - 시장적 조정: Market
 - 국가적 조정: State
 - 공동체적 조정: Community

- * 기업활동의 세 영역
 - 사기업: 공기업: 사회적 기업

기존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

- * 신자유주의 입장
 - 사적 경제 확장
 - 공공 경제 축소
 - 큰 시장과 작은 정부
("big market and small government")

- * 사회민주주의 입장
 - 공공 경제 확장
 - 사적 경제 축소
 - 큰 정부와 작은 시장
("big government and small market")

- * 사적 경제 vs. 공공 경제 (Market vs. State)

신진보주의 입장: 공생적 시장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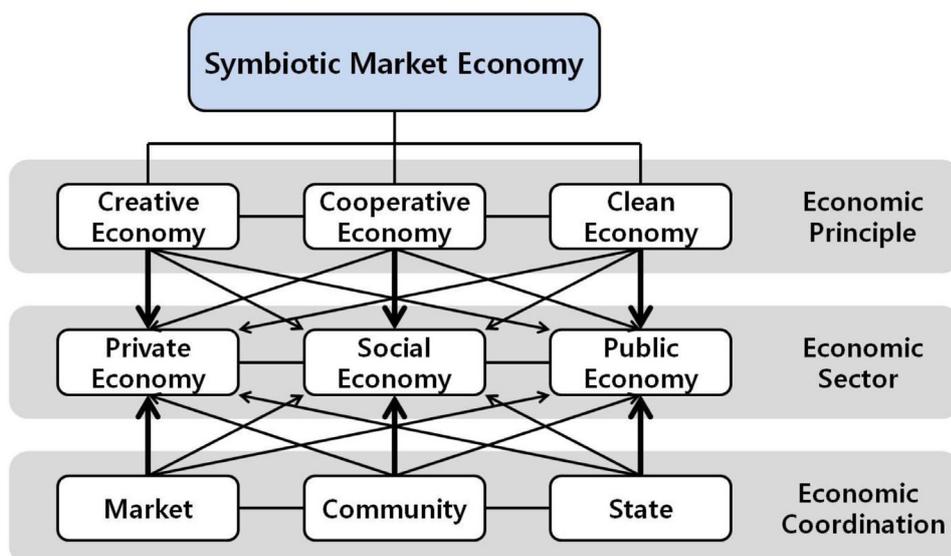
- * 사적 경제의 축소가
공공경제의 확장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야
- * 공공경제의 축소가
사적 경제의 확장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야
- * 공생적 시장경제는 확장된 사회적 경제 부
문을 가지는 경제

신자유주의 vs. 기존 진보주의 vs. 신진보주의

- *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LME) 지향
 - 사적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반대
 - 공공경제에 대한 시장 조정 강화(시장화)
 -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상업화
 - 공공부문 축소
 - 공공성 약화(사회서비스의 재상품화)
- * **기존 진보주의:** 조정시장경제(CME) 지향
 -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 조정 도입 반대
 -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의 탈상품화)

- * **신진보주의: 공생적 시장경제(SME) 지향**
- 시장적 조정에 대한 대안은 국가적 조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조정
 - 공동체적 조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보완
 - 시장근본주의와 국가개입주의를 넘은 공동체적 조정
 - “시장 vs. 국가” 이분법 넘어서
“시장 vs. 국가 vs. 공동체” 三分시스템 사고
- cf.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착근된 시장경제(Karl Polanyi)

공생적 시장경제: 경제원리, 경제부문, 경제조정양식



III. 공생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책의제

1. 신진보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니라 재규제(reregulation)
- 부자 감세가 아닌 증세
-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사회화(국가적 조정과 공동체적 조정 결합) cf. 재국유화가 아님!
- 사회서비스의 재상품화가 아닌 탈상품화
-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 지식주도경제: 금융주도경제를 넘어서

- 금융주도경제
 - 양극화와 금융위기 초래
 - 창의성을 파괴하는 투기성 조장
 - 노사타협 붕괴
 - 창조경제와 협력경제 원리 실현 불가능
- 공생적 시장경제 위해서는 금융주도경제가 극복되어야
- 창조경제와 협력경제의 원리가 실현되면 금융주도경제 극복 가능
- 창조경제는 금융주도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경제와 친화력이 있음

지식주도경제에서 양극화 극복의 길

- 지식주도경제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지식격차의 확대에 의한 양극화 현상 출현 가능
- 경제주체간의 지식격차를 줄이는 연대지식정책 (solidaristic knowledge policy)
- 연대지식정책의 핵심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투자
 - 자본의 지식집약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 자산기반평등주의 (asset-based egalitarianism)

3. 상향식 경제학: 하향식 경제학을 넘어

* 하향식 경제학 (Top-down economics)

- 상층(대기업, 금융부문, 부유층,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 확대에 경제 성장
-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기층(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빈곤층,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정책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규제완화와 감세
- 적하효과 부재: trickle-out effect 발생
-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와 금융위기 초래 (Reich, 2010)
- 양극화 침체 (polarized stagnation) 초래

* 상향식 경제학(bottom-up economics)

- 기층(블루칼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정책 패러다임(Talbott, 2008)
- 동반성장(shared growth)을 실현하려면 상향식 경제학 실현해야
- 중산층 재건과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 시장에서의 기층의 권력 혹은 교섭력 강화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거래를 없애야 상향식 경제학의 정책 효과 발휘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과 참가적 노사관계

- 노사가 공생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공생적 시장경제 실현가능
- 노사가 공생적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
 - 1) 시장에서의 대등한 권력관계
 -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 3) 참가적 노사관계

*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실현 조건

- (1) 유연한 노동시장
- (2) 관대한 실업급여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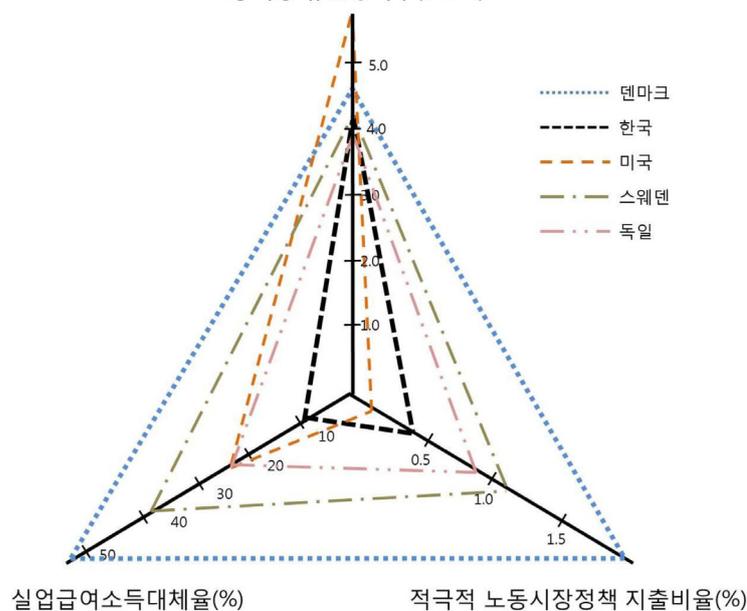
* Denmark의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 (1)+(2)+(3)
- 노사간의 Win-Win 관계

* 한국 노동시장 상황 (그림 참조)

- (2)와 (3)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1)
-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대폭 높이고 지급기간 연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폭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지수(6-EPL)



출처 : 김형기(2012),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응용경제, 제14권 2호

참가적 노사관계 실현

- 기업 의사결정에의 노동자 참가를 통해 실현
- 작업장 참가: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적극 참가
-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 투자방향과 경영 전략
- 현재 한국 상황
 - 사측: 작업장 참가 요구, 전략적 의사결정참가 반대
 - 노측: 작업장 참가 소극적,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 요구
 - 노사간 공생적 관계 위해서는 작업장 참가와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간의 선물 교환 필요

5. 경제안전망과 사회안전망

- * 경제안전망(Economic Safety Net)
 - 글로벌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격변성과 금융 위기와 고용위기를 초래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ex-ante) 안전망
 - 경제안전망=금융안전망+고용안전망
-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 시장경쟁의 패자를 복지체제를 통해 보호하는 사후적(ex-post) 안전망
 - 사회안전망=복지국가+복지공동체

* 복지국가(Welfare State)

- 정책주체: 중앙정부
- 실업자 등에게 현금급여 실시
- 전국 획일 기준
- 지방정부: 단순한 전달자와 실행자

*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

- 정책주체: 지방정부+지역 NGO/NPO
- 주민에게 현물급여 실시
- 교육, 의료, 보육, 양로 사회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출처 : 김형기(2012), "세계경제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진로-지속가능한 선진경제 실현 전략"

IV. 맺음말

- **공생적 시장경제 제도구축 위한 사회적 합의 정치 요청**
 - * **주요 사회적 합의 의제**
 -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 작업장 참가와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를 교환하는 노사합의
 - 사회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위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 * **글로벌 컨센서스**
 - 공생적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합의
 - Washington Consensus를 넘어서는 New Global Consensus 형성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발제문

한국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경제·민생정책의 비전과 과제

-사람 중심 시장경제의 신성장모델-

1.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노선과 비전

□ 당강령 경제정책

- 민주통합당 강령(2011년 12월 개정) 경제분야 4대 정책노선
 -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실현
 - 노동의 권익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 민주통합당 강령 경제정책의 변화: <부표1>
 - **자유주의 노선(자유시장과 성장)에서 출발하여 케인즈주의 노선의 요소(복지와 분배)가 가미되는 형태로 진화**
 - 시장경제분야 :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경제민주화
 - 성장·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 성장과 분배의 조화→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 노동·노사관계: 공동공영의 노사관계→사회통합적 노사관계→차별없고 공정한 노동시장→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강령 정책노선의 위상
 - 이념노선: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노선의 혼합(자유주의 노선의 우위)**

	자유주의 노선	케인즈주의 노선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노동친화적 기업문화, 동일노동 동일 임금 실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득분배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공적 부조 강화· 조세정의 실현, 불로소득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

- 새누리당과의 비교

- 새누리당 개정 강령(2012. 3)과 목표는 동일 혹은 유사, 정책수단은 일정한 차이
- 재벌개혁, 소득분배, 노동분야에서 차별성 유지, 다른 분야에서는 차별성이나 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함

<민주통합당 강령(2011.12)과 새누리당 강령(2012.3)의 경제정책>

구분	영역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없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 불공정거래 규제 - 동반성장 - 지속가능 녹색성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목표는 유사하지만 정책수단에서 차별화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민주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vs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 - 조세정의: 경제민주화의 일환, 불로소득 근절 vs 복지재원 확충 수단 - 일자리 창출: 기업의 고용책임 부과(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 vs 기업 지원 중심(중소기업 육성, 벤처 창업활성화 등) - 경제성장: 사람을 위한 성장 vs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장 - 복지: 보편적 복지(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 vs 평생맞춤형 복지(보편과 선별을 아우르는 한국형 복지)
목표와 정책수단에서 차별화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배: 소득분배의 형평성 vs 효율과 형평의 조화 - 노동: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노사관계의 다층화, 노동친화적 기업문화) vs 노사 자율(자율적 분쟁해결) - 통상: 한미 FTA 등 통상정책 전면 재검토 vs FTA 체결 단계적 확대

주: <부표 2> 참조

□ 대선 경제정책공약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0대 핵심정책공약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1. 만나바 일자리혁명 으로 사람경제 실현	6. 일자리 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
2.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3.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와 성평등사회	2. 한국형 복지체계 의 구축
8. 혁신경제 로 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3. 창조경제 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10.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7. 농어촌 활성화 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핵심경제정책공약의 **수렴 현상**(우선 순위 차이)

○ 민주통합당 대선 경제정책공약: 강령정책과의 비교

- ‘일자리 혁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강령정책의 계승: 경제민주화와 보편 복지
- 추가: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구축
- 수정: 한미 FTA ‘전면 재검토’에서 ‘독소조항 재협상’으로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주요 경제정책공약 비교

정당명 구분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재벌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금산분리 강화(산업은행의 은행소유규제 부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규제) •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 강화 •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순환출자 금지 •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 금산분리(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 5년간 5%로 강화)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사익편취행위 근절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 중견기업 육성(4,000개) • 중소기업 공동R&D기금 확대(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R&D지원, 인력확보지원(인력공동관리체제)

정당명 구분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전환 •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확대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리뉴얼 및 매장 확장비용 가맹본부 부담 의무화 •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소상공인 제품우선구매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 의 •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 공단 설립 • 소상공인 사업 인프라 구축, 협동조합 활 성화 • 골목가계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근로시간 단축(5년 내 연 2,000시간), 7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좋은 일자 리 창출, 사회적 경제 구축 • 혁신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 문화IT 융복합 창조 혁신기업,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 성 • 청년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정원의 3%) - 청년창업, 블라인드채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단축(2020년 1,800시간), 대기 업과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 자리 창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창조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신산업,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 청년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스펙초월채용시스템, 청년 해외취업 장려
일자리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상사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 - 민간부문 전환기금조성으로 전환지원 • 차별해소: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현 - 대기업의 불법과건과 위장도급 근절 •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의 50%) •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 구직촉진급여,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정년연장(60세) 법제화와 단계적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상사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 • 사내 하도급 차별해소: 사내하도급근 로자보호법 제정 • 최저임금 기준 마련(경제성장률과 물 가상승률 기본반영) • 비정규직(130만원 미만) 사회보험료 면제 • 정년연장(60세)
가계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제한법: 사금융 이자율상한 25% •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50%감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1천만원 한도)
주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연간 12만호), 매 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월세 인상 상한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없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재협상(ISD 등 독소조항) • 한중 FTA추진 재검토 • 관리가능한 개방(국내경제와 공생하는 FT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신중 추진(농어민 권익 배려)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5 년간 135조원 예산 투입) • 무상보육(0-5세), 무상교육(고교) • 반값 등록금: 전소득계층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복지예산: 5년간 18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5년간 42조 원 투입) • 무상보육(0-5세), 무상교육(고교) • 반값등록금: 소득계층별 차등 • 기초 연금 2배 증액 • 복지예산: 5년간 135조원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기능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재정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확충(지하경제 양성화 등) • 정부지출 축소 •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의견수렴(국민대 타협위원회 구성)

- 양당 대선 공약, 강령정책보다 더 수렴
 - 민주통합당: 재벌개혁, 복지, 노동 분야에서 진보적 공약
 - 새누리당: 재벌개혁, 복지, 노동 분야의 진보적 공약 일정 부분 수용, 가계부채 탕감 등 일부 민생 분야에서 공세적 공약
- 강령정책보다 정책노선상의 차이가 더 좁혀진 가운데, **공약의 신뢰성과 현실성**이 대선 정책공약 대결의 포인트

□ 당강령 정책노선과 대선공약의 평가

- 당강령 정책노선의 평가
 - 자유주의 노선의 한계
 - 민주당 정부의 자유주의 노선과 ‘민생정치의 실패’ 경험: DJ, 노무현 정부, ‘경제의 시장화’ 추진(정리해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대형 마트 허가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 새누리당의 자유주의 정책노선 수용으로 차별성 약화
 - 케인주주의 노선의 문제점
 - 위로부터의 시장경제 개혁 치중,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 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 부족,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
 - 과제
 - 진보노선과 자유주의의 관계 재정립: 자유주의 노선의 양면성(개혁적 요소와 경제양극화 유발 요소)에 대한 인식
 -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노선의 가치충돌 해소: ‘자유경쟁’ 가치와 ‘형평’의 가치 충돌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 발굴
- 대선 경제공약의 성과와 문제점
 - 성과: (진보 정치의 패배였지만)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
 - 역대 대선중 2012년은 진보정책노선에 가장 유리했던 국면: 극

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분야에서 진보적 공약 일부 수용
- 민주통합당, ‘의료비 본인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등 파격 공약
- 문제점(1) **‘경제정의 실현’ 차원의 형식적 경제민주화**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인가?
 - 경제양극화 해소(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문제와 직결된 **실질적 경제민주화**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함(대선에서 5060세대의 선택)
- 문제점(2) **보편 복지=획일적(uniform) 복지?**
 - 국민들은 보편복지=‘100% 획일적 복지’로 이해(새누리당의 혼합 접근보다 우월한가?)
 - 불확실한 자원, 보편 복지 공약의 신뢰성 반감
- 문제점(3)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새 경제질서 창조 비전 미흡**
 -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보편복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창조 비전 제시 부족

2. 정책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 정책노선의 재정립

○ 기본방향

-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회생**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자유주의 노선과 케인즈주의 노선을 넘어 **상생과 협동의 공동체**

- 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보노선의 새로운 정책비전 정립
- ‘진보정치의 혁신’과 ‘**민생진보노선**’의 정립
- 출발점: 민주통합당의 ‘대선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 민생진보의 정책비전

- 1) **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회적 기본권의 신장**
 - ‘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신장’은 진보노선의 고유한 가치(보편 복지 이념의 핵심적 요소)
- 2) **공정·상생·협동의 사람중심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자유주의 노선(자유와 공정경쟁)의 ‘공정’ 가치는 채택하고, **상생과 협동의 공동체적 가치**로 ‘경쟁’의 한계 극복
 - 조직·집단간 ‘**상생**’, 조직·집단내 ‘**협동**’으로 공동체적 가치 구현
 - 공정, 상생, 협동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
- 3) **함께 누리는 성장**
 - 공정·상생·협동의 사람중심 시장경제 질서 구축으로 재벌위주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대안적 성장모델 추구**

□ 민생진보의 3대 정책비전

○ 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신장

- 국민의 기회평등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신장
 -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노동권, 생활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권 등)
- **보편 복지와 사회보장의 공공성 추구**

- 보편복지는 기회평등의 보장의 핵심이념

○ 공정·상생·협동의 사람중심 시장경제질서 확립

- 공정(fairness), 상생(coevolution)과 협동(cooperation)의 가치 지향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 **공정경제**
-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동반성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지역 공동체 등 자조적 협동화, **공동체적 호혜성**에 기반한 **협동경제**
- 사회적 약자의 배제가 아니라 **상생의 사회적 포용 경제**

○ 함께 누리는 성장

- 성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를 넘어 성장-분배-복지의 선순환에 기반한 **함께 누리는 성장** 추구
- 공정성, 협동성, 창의성에 기반한 밑으로부터의 혁신동력 창출, 혁신의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적 성장** 추구

□ 민생진보의 경제민주화와 보편 복지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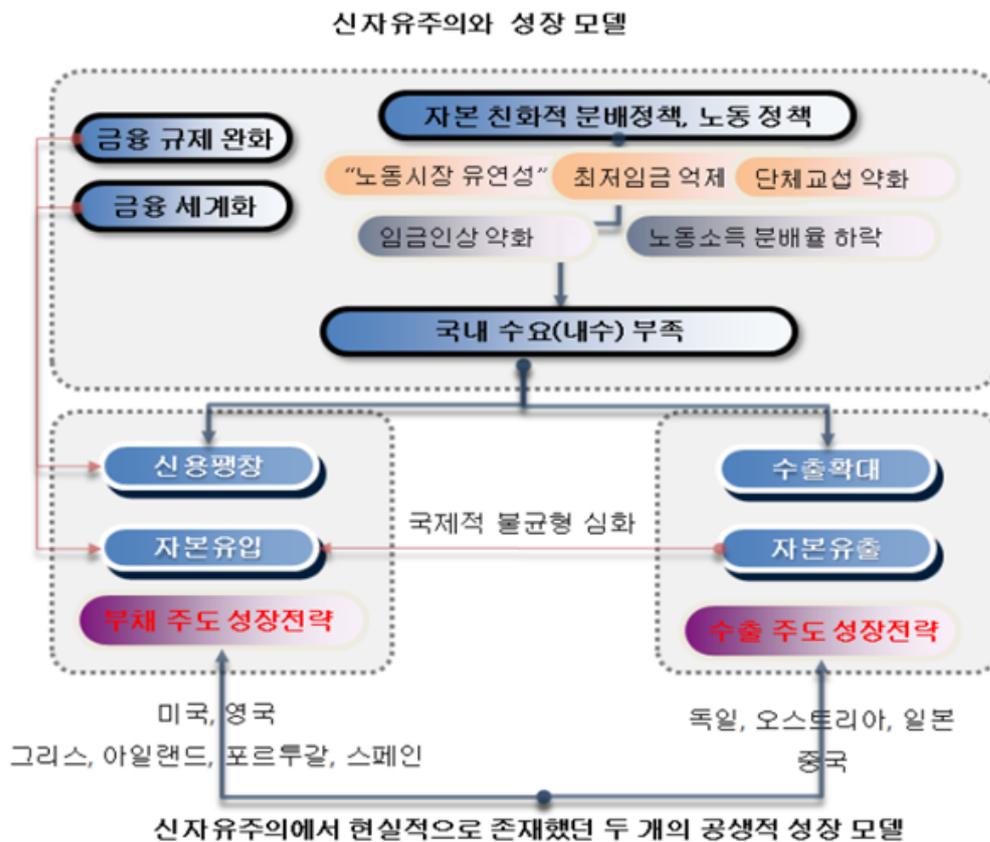
- 형식적 경제민주화에서 **실질적 경제민주화**로
 - ‘**경제 정의 실현**’ 차원의 형식적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로
 - **밑으로부터의 경제민주화 동력**(이해관계자의 조직화와 자조적 협동화) 창출과 **위로부터의 시장경제 개혁**(국가개입을 통한 시장규제)의 조화
- 재벌개혁
 - ‘**소유지배구조 개혁**’ 위주에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중심으로

○ 보편복지

- **획일화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신장**
- 보편복지의 수준과 내용에서 **분야별 특성 고려**(예: 보육, 초중등 교육, 의료는 100% 복지; 주거, 연금은 소득 고려 등)
-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 추구

□ **사람중심 시장경제의 신성장모델**

○ 신자유주의 성장모델: 부채주도성장과 수출주도성장



○ 현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 **재벌 위주 성장**과 **신자유주의 성장**의 **악조합**, **경제양극화**와 **민생 경제의 위기**를 **유발하는 성장모델**

(1) 재벌 대기업 위주 성장

- 거대 재벌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동반성장 저해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침식과 갈등비용 증가

(2) 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소멸과 ‘고용 없는 성장’
- 세계경제 불황국면의 불안정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3)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 가계부채 1,000조원의 시한폭탄 내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성장모델

- 신자유주의 이윤주도(profit-led) 성장모델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유효성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세가지 대안적 성장모델 제시
- 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기본 방향	· 고용률 증가→노동분배율 개선	· 임금증가→노동분배율 개선	· 소득증가→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 일자리 창출 · 고용의 질 개선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제(생산성상승과 임금상승의 연계)	· 근로빈곤층 생활소득 보장, 자영업자 경영안정 · 최저임금제 강화 ·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급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효율임금) · 고부가가치부문의 구조개선 효과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수요	· 내수증가(소비증가) · 수출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비교	·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	· 중앙집중적 노사단체 교섭체도가 발달된 국가	·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자료: Campbell D., "The Non-mystery of Employ-led Growth", ILO, 2011; UNCTAD, "An Incomes Policy for Wage-Led Growth",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 "Rebalancing Global Growth: The Role of an Income-led Strategy", World of Work

(1) 고용주도 성장(employment-led growth)

- 노동시장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근로빈곤층 감축

(2)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 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의 제도화, 생산성임금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취업알선)
- 노사관계정책: 노동조합의 활성화

(3)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 근로빈곤층, 영세자영업자의 기본 생활소득보장
- 소득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접근성 증대

○ 사람중심 시장경제의 신성장모델

- 현실 여건 고려 사항

- 높은 수출의존도, 낙수효과의 소멸, 내수시장의 위축
-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극심한 임금격차
-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종사자 800여만명(사업체 종사자의 57%)

<표> 전국 사업체중 소기업·소상공인 구성비 (단위: 개, 명, %)

구 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125,457	2,748,808	87.9	3,002,333	96.1	119,999	3.8	3,122,332	99.9
종사자	14,135,234	5,333,561	37.7	8,056,436	57.0	4,206,099	29.8	12,262,535	86.8

자료: 통계청, 2010 '전국사업체통계조사'

주: 소상공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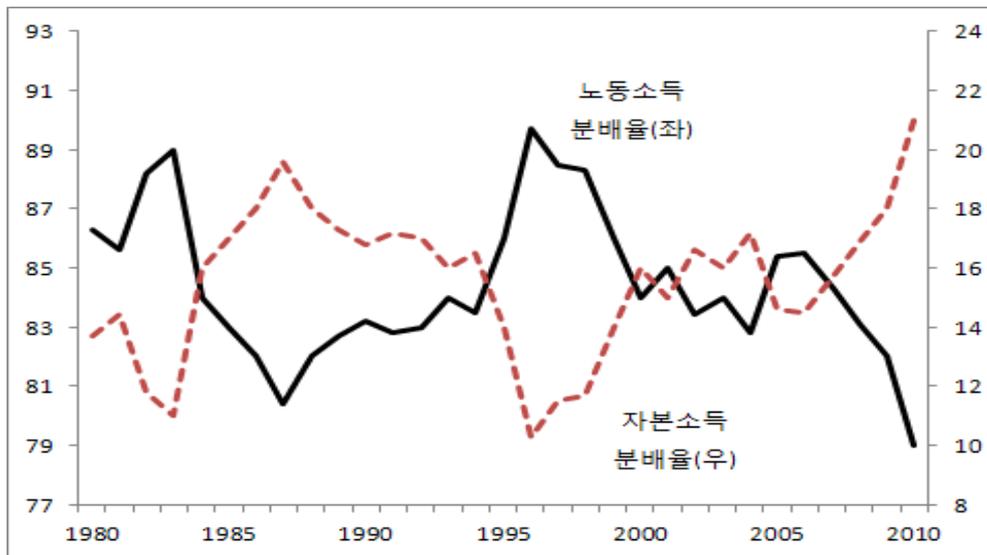
- 정책목표: '함께 누리는 혁신적 성장'

- 공정·상생·협동의 사람중심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극복하고, 중산층, 서민, 노동자에게 결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성장 실현

- 정책관리지표(policy targeting index)

- 고용율, 수정노동소득(피용자보수+자영업자소득)분배율, 사회보장률

<그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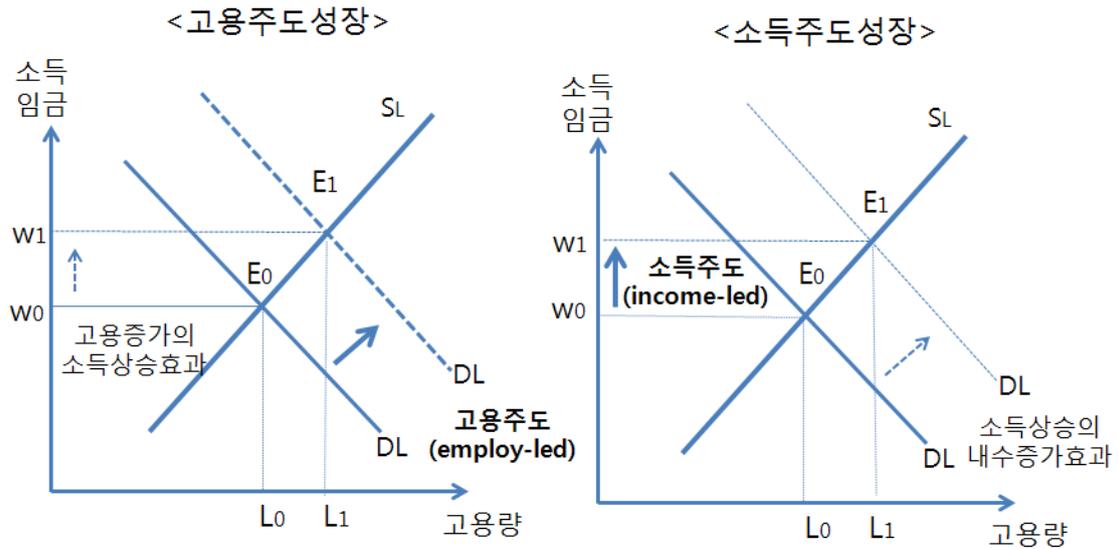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12),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사회지표의 변화

주: 수정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 자영업자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

수정 자본소득분배율=영업잉여/요소비용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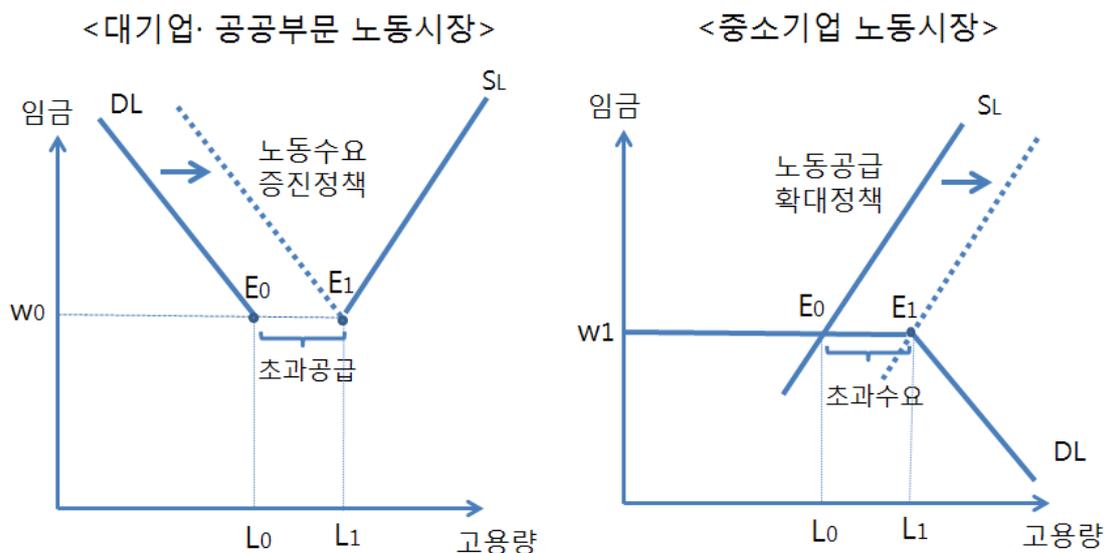
○ 신성장모델의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

- (1) 거시 사회경제정책: 고용주도(employment-led)와 소득주도(income-led)의 혼합전략



- **고용주도:** 혁신경제·협동경제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 **소득주도:** 근로빈곤층과 서민의 기본 생활소득 보장 및 소득증대 (최저임금 현실화, 소상공인 사업보호와 경영안정, 사회보장 강화 등)

(2)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대와 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의 병행전략



-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진정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업 육

성,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단축

- **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정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사회보험·임금 보조

○ 분야별 핵심정책

- **(고용주도)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 혁신적 협동경제**

- 공공 사회서비스업 육성과 사회보험의 공공성 확보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협동조합형 사회서비스업(교육, 의료, 육아, 돌봄) 육성

- **(소득주도) 사회보장의 실질적 강화정책: 사회적 포용의 상생경제**

-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장기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에 구직촉진 급여,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무상보육, 사회보장률 제고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책**

-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 **중소기업: 노동공급 촉진정책**

- 중소기업 인력공급지원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임금보조: 법인세감면, 고용장려금 등 채용보조 위주에서 취업보조 위주로
- 비정규직 및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금 해소

○ 신성장모델이 추구하는 성장

- **사회 포용적 성장(social inclusive growth)**

-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 내수 시장 확대로 골목상권 안정적 수요기반 창출

- **협동적 동반성장(cooperative win-win growth)**

- 상생 협력의 기업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 지역밀착형 사회적 협동경제 구축

- 지속가능한 혁신적 성장(sustainable innovation-driven growth)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건강한 기업생태계, 창의와 협동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혁신성 회복
 -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 녹색성장 추구

3. 주요 정책과제

□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확장

-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사회보험 보장률 제고,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 최저임금 현실화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차보호
 - 가계부채부담 완화, 약탈적 금융 규제
- 노동시장 차별 철폐와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 차별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상시직 업무의 정규직 전환
 - 법정노동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대형마트·SSM 신규 입점 허가,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의무휴업일 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안정
 -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리뉴얼 및 매장 확장비용 가맹본부 분담
 - 공동구매, 공동브랜드화 등 협동화 사업 지원
- 조세정의 구현과 복지재원 확충

- 불로소득 근절
- 소득세 기능 정상화
-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개혁
- 조세부담률 제고(2012년 조세부담률: 19.2%)
-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지수 공시제도

□ 공정·상생·협동의 사람중심 시장경제질서 확립

-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근절과 금산분리 강화
 -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
 - 대중소기업 납품가격원가연동제, 협력이익배분제 활성화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공시제도
- 자립적 협동경제 활성화
 -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형 사회적 경제 활용

□ 함께 나누는 혁신적 성장의 추구

-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
 - 개방형, 네트워크형, 기술확산형 국가혁신시스템 확립
-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 지원과 R&D 투자 활성화(중소기업 공동 R&D기금 조성)
 - 청년 청년벤처 창업지원

○ 혁신산업 발굴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부표 1> 민주통합당 강령 경제정책의 진화

구분 정당명	시장경제	성장과 분배	노동	복지	통상
새천년민주당 (2000.1)	•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지식기반경제 건 설	• 성숙한 노사문 화 정착 • 공존공영의 노 사관계	• 생산적 복지 와 기초생활 보장	• 개방형 신 통상국가 • FTA추진
열린우리당 (2003.11)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 립 •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	• 경제의 안정적 성장 • 성장과 분배의 순순환구조 정착	• 절대 빈곤 없는 따뜻한 사회 • 사회 통합적 노 사관계	• 참여복지 실 현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	• 동북아 경 제중심국가 • FTA추진
대통합민주신당 (2007.8)	• 공정한 시장경제 • 사람중심 지속가 능한 시장경제	• 공정하고 역동적 인 선진경제 건설 • 성장과 복지의 순순환구조 지향	• 노동시장 유연 성과 사회적 안전 망 확충 • 사회 통합적 노 사관계	• 인간중심의 따뜻한 복지 와 사회대통 합 실현	• 대외개방을 통한 국가 선진화
통합민주당 (2008.2)	• 중산층 강국건 설 • 민생제일주의 경제	• 선진경제 강국 • 성장과 분배의 조화 • 기업규제 완화	• 노동자를 존중 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 차별 없고, 공정 하며, 유연한 노 동시장 실현	• 보편적 복지 사회 실현과 건강 형평성 보장	• 능 동 적 개 방 • 글로벌 무 역강국
민주당 (2008.7)	• 공 정 시 장 질 서 확립 • 사람중심 시 장경제	• 과학기술문화강 국 • 인적자원과 기 술혁신투자	• 차별 없고, 공정 한 노동시장 구현 • 노사자율교섭권 보장하는 미래지 향의 노사관계	• 일자리 중심 보편 복지국 가	
민주통합당 (2011.12)	• 경제민주화 • 공정한 시장경제 의 확립	• 사람을 위한 경 제성장	• 노동자 권익보장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보편적 복지 • 소득과 분배 의 형평성 제고	• 한 미 F T A 전면재검토

<부표 2> 민주당과 새누리당 강령정책 비교: 이념, 비전과 정책

정당명 구분	민주통합당 (2011.12)	새누리당 (2012. 2)
이념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 극복 •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 실현 • 평화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철학과 가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 • '국민행복 국가' •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 추구(국민통합적 접근)
경제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조세정의, 불로소득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 불공정거래 규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 성장 • 모든 경제주체의 동반성장 • 생태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 •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와 녹색성장(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 제도 및 실업안전망 확충,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 성평등정책 구현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 청년실업 해소(국정 최우선 과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 녹색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 -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 해소, 정규직 전환 노력, 근로시간 적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문직업인의 애로 해소를 고용을 제고 -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벤처기업, 창조기업 등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노동, 노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노동친화적 기업문화 육성 -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 분쟁해결 시스템 정착
중소기업/소 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중소기업 육성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 해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 -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 공적 부조 강화 - 실질적 무상의료(건강보험보장률제고) -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 법제화, 기초노령연금 강화 -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맞춤형 복지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아우르는 한국형 복지모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 - 기회의 사다리 복원(복지와 일자리, 교육 정책 연계)
재정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정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재정 지향 • 조세정의 실현(조세 회피 차단) •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에 기초한 복지재원확충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 등 통상정책 전면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개방 • 자유무역협정 체결 단계적 확대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발 제 문

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1. 민주통합당의 강령·정책에 나타난 현실인식

□ 민주통합당의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은 다음과 같다.

-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초래하였다.
-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하고 추진한다.

- 민주통합당의 현실인식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고 있으며, 실천목표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경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재벌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자본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과 선성장후분배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시대를 거치면서 재벌대기업은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포함하여 다수의 근로대중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합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최저임금수준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저수준의 복지지출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서민층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재벌대기업과 상위소득집단에 집중된 다양한 비과세감면과 낮은 누진성으로 인해 과세공평성은 물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정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예산은 조세 및 재정 제도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실천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 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 실천목표로 제시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 그리고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를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 핵심은 누진세제의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개발연대 시대의 경제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조세재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화기능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2.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1) 경제민주화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원칙으로 표명하고 있다.
-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경쟁과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실천방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최장집(1998)은 경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면, 민주주의는 분배에 대한 집합적 결정과정과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민주적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이념과 독트린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쟁원리의 작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

- 경제민주화는 ‘민주적 시장경제’보다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양자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최소한 시장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성의 완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 및 빈곤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1) 김균·박순성(1998)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과 시민사회의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결합하는 적극적 해석과 시장에 대한 긍정적 해석의 결합에 기초하는 소극적 해석으로 구분하고, 최장집(1998)의 견해를 적극적 해석으로 간주한다.

2) 조세정의

- 민주통합당의 강령·정책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경제민주화의 일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세정의(tax justice)는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요구한다.
 - 이러한 점에서 조세정의를 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 자유주의자들(libertarian)의 공정과세(tax fairness)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시장에서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자들의 공정과세(tax fairness)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²⁾

 - 또한 지불능력에 따른 과세가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시정하는 재분배정책으로 이해된다면, 과세의 공평성은 정부지출 측면에서의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정부는 사회정의의 올바른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세와 재정지출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채택해야만 한다.

 - 본 발제문에서 조세정의(tax justice)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정과세를 넘어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과세방식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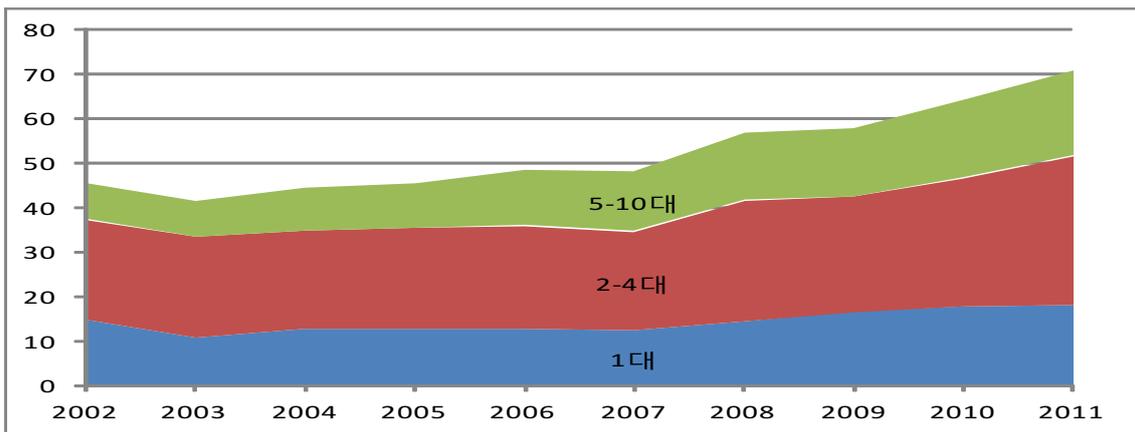
2) Murphy and Nagel(2002)에 따르면 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everyday libertarianism)의 견해는 시장분배가 공정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정의(tax justice)는 무엇이 그러한 상태로 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3. 과세환경과 조세체계

1) 과세환경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력집중의 심화, 양극화 및 분배구조의 악화, 저성장 및 고용창출력의 약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은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요구되는 주된 과세환경이다.
- 먼저 199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집중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상위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그림 1>에서 보듯이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5.5%에서 2007년 48.1%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 71.0%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상위재벌집단의 국민경제 비중 (단위: %)



주 1: 수치는 매출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부감사법인으로 금융보험회사는 제외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 다음으로 <표 1>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지니계수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의 차이는 작아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기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표 1> 소득분배 지표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도시가구	전체가구	도시가구	전체가구	도시가구	전체가구
1990	3.93		7.8		0.266	
1991	3.77		7.2		0.259	
1992	3.71		7.4		0.254	
1993	3.84		8.2		0.256	
1994	3.76		7.9		0.255	
1995	3.85		8.3		0.259	
1996	4.01		9.1		0.266	
1997	3.97		8.7		0.264	
1998	4.78		11.4		0.293	
1999	4.93		12.2		0.298	
2000	4.40		10.4		0.279	
2001	4.66		11.3		0.290	
2002	4.77		11.1		0.293	
2003	4.66		12.1		0.283	
2004	4.94		12.8		0.293	
2005	5.17		13.6		0.298	
2006	5.39	6.65	13.8	16.6	0.305	0.306
2007	5.79	7.09	14.9	17.3	0.316	0.312
2008	5.93	7.38	14.7	17.5	0.319	0.314
2009	6.11	7.70	15.4	18.1	0.320	0.314
2010	6.02	7.74	14.9	18.0	0.315	0.310
2011	5.96	7.86	15.0	18.3	0.313	0.311

주 1: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하위2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20%의 평균소득의 배수
 2: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비중
 자료: 통계청.

□ 부(wealth)의 분배구조는 소득에 비해 매우 불평등하다.

- <표 2>에서 보듯이 총자산의 5분위배율은 2006년 39배에서 2011년 65배로 증가하여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동기간에 0.634에서 0.606으로 낮아졌지만, 시장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2> 자산분배의 불평등지표 (단위: 만원, %)

		2006년		2011년	
		가구당 금액	구성비	가구당 금액	구성비
총자산	상위 1%	388,128	13.0	396,009	9.9
	상위20%(a)	76,655	54.1	96,873	59.7
	하위20%(b)	1,948	1.7	1,493	1.1
	5분위 배율(a/b)	39배		65배	
	지니계수	0.634		0.606	
금융자산	상위 1%	77,007	11.3	104,443	11.0
	상위20%(a)	15,395	51.1	20,104	53.1
	하위20%(b)	298	1.1	254	0.8
	5분위 배율(a/b)	52배		79배	
	지니계수	0.607		0.637	
실물자산	상위 1%	348,116	15.6	345,701	11.8
	상위20%(a)	64,797	56.8	69,491	53.5
	하위20%(b)	144	0.2	29	0.03
	5분위 배율(a/b)	450배		2,396배	
	지니계수	0.700		0.679	
순자산	상위 1%	347,956	14.5	337,554	10.6
	상위20%(a)	68,483	54.1	70,045	50.4
	하위20%(b)	854	0.8	-70	-
	5분위 배율(a/b)	80배		-	
	지니계수	0.662		0.629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가계금융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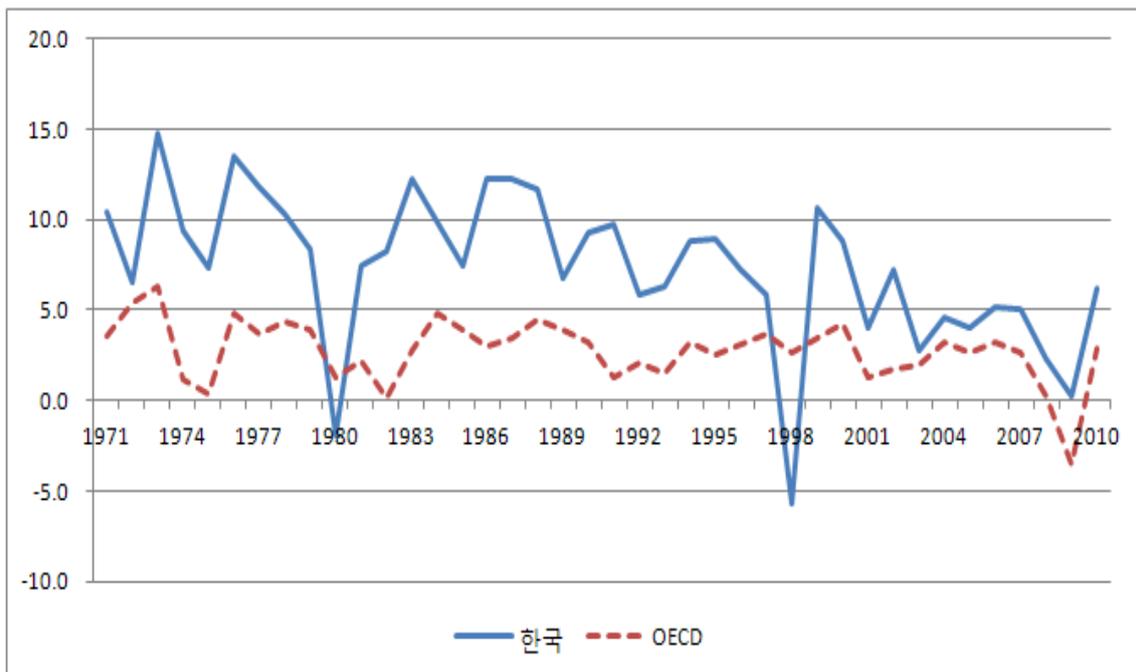
□ 한편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 <그림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더욱이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고, 특히 취약한 내수기반으로 인해 경제위기시의 변동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취업계수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경제성장률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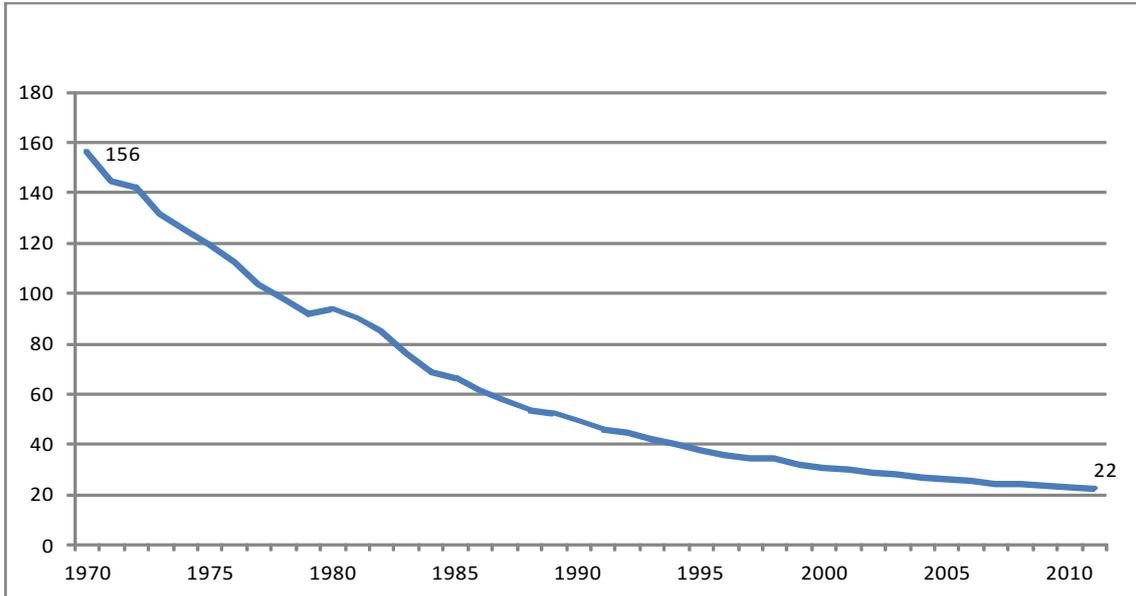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그림 3> 취업계수

(단위: 명/10억원)



주: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단위: 10억원).

자료: 통계청.

- 결국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가 위협을 받고 있다.
 - 분배구조의 악화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합리적 자원배분체계의 왜곡, 세대간 계층 유동성의 제약, 사회통합의 저해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³⁾
 - 따라서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3) 조윤제·박창귀·강종구(2012)는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2) 취약한 과세공평성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tax mix)는 막대한 규모의 탈루소득과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해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 및 고소득집단에 세제혜택이 편중되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기능이 미약하여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첫째, 자산 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자산과세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의 인별 합산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등으로 2007년 2조 4,143억원에 달하던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11년 1조 1,01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더욱이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소득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둘째,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은 일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은 5조 5,584억원이며, 이 중 79.0%인 4조 3,939억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었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 중 43.2%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등을 이용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표 3> 법인세 세액공제(2010)

(단위: 개, 억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13,986	24,033	1,989	15,960	11,997	8,073
최저한세 적용대상	18,478	31,551	4,838	27,977	13,640	3,574
합계	32,464	55,584	6,827	43,937	25,637	11,6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 더욱이 법인세 세액공제의 30.6%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상위10대 기업에 집중되었다.
 - <표 4>에서 보듯이 2009년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54.0%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에 대한 총조세지원액(tax subsidy)은 8조 4,32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59.6%를 상위 10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삼성전자의 비중은 무려 21.9%에 달한다.⁴⁾
 - <표 5>에서 보듯이 2010년 삼성전자의 비과세수익과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2조 7,723억원에 달하여 법인세비용 1조 7,929억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11.9%로 법인세 최고세율(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⁵⁾

4) Wilkie(1992)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세지원액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으로 한정되며, 회계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과 간접도세혜택을 합한 금액만큼 왜곡되어 측정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노준화(2002) 참조.

5) Bureau Van Dijk의 OSIRIS Database(연결재무제표 기준)를 이용하여 구한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5%로 동종업종의 Apple(2010년, 24.4%), Nokia(2010년, 24.8%), SONY(2009년, 51.9%)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4>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조세지원액

(단위: 억원, %)

순위	임시투자세액공제(2009년)			조세지원(2010년)		
	회사명	공제액	비중	회사명	지원액	비중
1	A	5,179	24.5	삼성전자	18,842	21.9
2	B	1,430	6.8	하이닉스	6,012	7.1
3	C	1,258	5.9	삼성코닝정밀소재	5,303	6.3
4	D	882	4.2	현대자동차	4,886	5.8
5	E	782	3.7	LG전자	4,411	5.2
6	F	417	2.0	포스코	2,990	3.5
7	G	380	1.8	히닉스아프로	2,780	3.3
8	H	367	1.7	LG디스플레이	2,052	2.4
9	I	285	1.3	대한전선	2,037	2.4
10	J	280	1.3	기아자동차	1,503	1.8
10개사 소계		11,260	53.2	10개사 소계	50,344	59.7
전체		21,165	100.0	전체	84,321	100.0

주: 조세지원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율)-법인세비용.

자료: 윤영선(2010),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표 5>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 내역(2010년)

(단위: 억원)

구분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0,293.3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36,371.0
조세조정	비과세수익	(10,938.5)
	비공제비용	10,428.6
	세액공제	(16,784.1)
	기타	(1,148.3)
법인세비용		17,928.7

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 한편 상위소득층의 경우 하위소득계층에 비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에서 보듯이 최하위1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대비 소득공제액 비중은 9.4%인 반면, 최상위10% 소득계층의 소득공제액은 12.2%로 나타났고, 9분위에서 소득공제액 비중은 19.4%로 가장 크다.
- 또한 <표 7>에서 항목별 소득공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상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의료비(8.5%), 교육비(22.5%), 주택자금(6.0%), 기부금(11.0%), 연금저축(7.1%)의 비중이 하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높다. 더욱이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해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표 6>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비중(2009년) (단위: %)

소득10분위	소득비중	소득공제비중	소득공제액/근로소득
1분위	2.9	1.7	9.4
2분위	3.9	2.7	10.6
3분위	5.5	4.3	12.0
4분위	7.7	7.4	15.0
5분위	9.1	8.9	15.2
6분위	10.7	11.9	17.2
7분위	10.2	12.1	18.4
8분위	13.8	15.3	17.1
9분위	15.0	18.8	19.4
10분위	21.4	16.9	12.2
전체	100.0	100.0	15.5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표 7>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내역(2010년) (단위: %)

공제내역	상위 20%	하위 20%
보험료	22.6	54.8
의료비	8.5	4.8
교육비	22.5	13.4
주택자금	6.0	1.5
기부금	11.0	1.4
개인연금저축	0.5	0.0
연금저축	7.1	1.7
투자조합출자 등	0.2	1.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20.7	20.5
우리사주조합 출자	0.6	0.0
장기주식형투자	0.2	0.0
기타	0.1	0.04
전체	100.0	100.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 이와 같이 재벌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법인세부담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미약하고, 고용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 더욱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투자 및 고용효과는 재벌기업에서 더욱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의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다.

- 특히 재벌의 경우 다양한 절세 및 탈세수단을 활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자기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증여의제의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1998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수단을 차단하였다.
 - 2003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6) 이운재·김경표(2004), 김우철(2007), 강병구·성효용(2008) 등은 법인세부담의 투자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곽태원·이병기·현진권(2006)은 법인세의 투자효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현숙(2004), 이철인(2006), 강병구·성효용(2008)의 경우 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7) 신현걸(2000), 김유찬·김진수(2004), 윤영선(2010)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2012)는 조세지원액 대비 고용자 증가수로 측정한 조세지원의 고용창출계수는 2010년 기준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5.6인 반면, 비10대 재벌기업에서는 9.9로 보고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탈세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에 대해 최종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성의 이재용은 고작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200조원(2009년 9월 16일 기준) 이상에 달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를 물려받았다.⁸⁾

- 최근에는 회사기회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총수 일가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 경제개혁연구소(2011)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으로 평가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넷째, 사업소득자 및 법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 과세공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조사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에 4,704건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조 7,561억 원의 적출과표에 대해 6,0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 업체당 1억 2,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3,570천 명 중 3,626명(0.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970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33.7%

8) 자세한 내용은 김용철(2010) pp.108-110 참조. “에버랜드는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의 핵심고리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을 놓고, 이재용이 아버지에게 받은 61억 원을 밀천으로 에버랜드를 장악했다. 당시 이재용이 낸 증여세가 16억 원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45억 원으로 에버랜드를 장악한 셈이다.”

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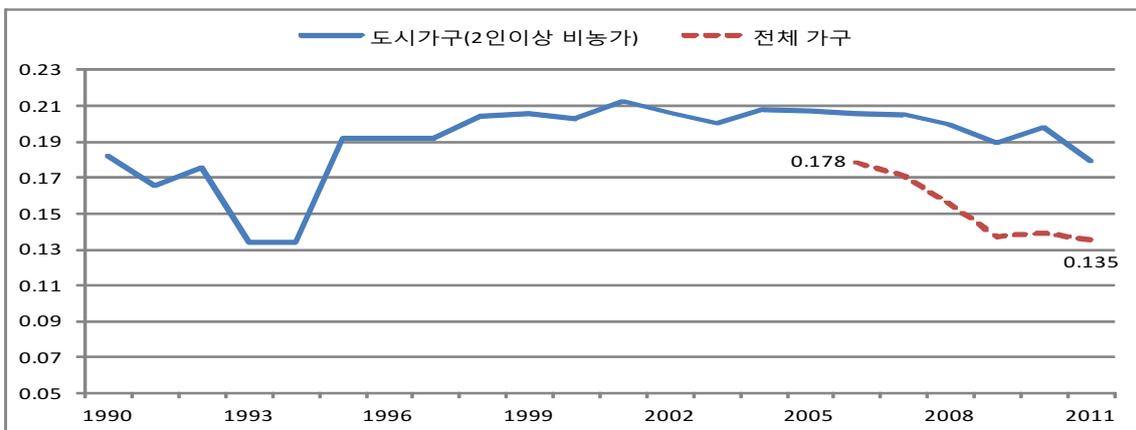
-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2010년 가동법인수 440,514개 중 4,430개 (0.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조 4,4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11.8%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하였고, 매출액 규모 2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0%를 넘는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과세공평성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되고 있다.

○ <그림 4>에서 보듯이 TR(Tax Redistribution)계수로 측정된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다.

- 도시가구(2인 이상 비농가)를 대상으로 추정된 TR계수는 1994년 0.134에서 2004년 0.208로 증가한 이후 2011년 0.179로 하락하였다.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된 경우에도 2006년 0.178에서 2011년 0.135로 하락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림 4>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취약한 수직적 공평성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8>에서 보듯이 순개인소득세(net personal income tax)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체계의 누진성은 비교되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8> 법정 순개인소득세의 누진성지수

국가	2000년	2009년
아일랜드	0.23	0.23
벨기에	0.19	0.22
헝가리	0.16	0.20
룩셈부르크	0.18	0.18
멕시코	0.17	0.17
핀란드	0.16	0.16
스페인	0.13	0.16
호주	0.17	0.16
아이슬란드	0.20	0.15
프랑스	0.10	0.14
네덜란드	0.10	0.14
캐나다	0.13	0.14
이탈리아	0.12	0.14
포르투갈	0.13	0.13
독일	0.16	0.13
그리스	0.10	0.13
스웨덴	0.10	0.12
노르웨이	0.12	0.12
체코	0.06	0.12
미국	0.10	0.11
슬로바키아	0.07	0.11
덴마크	0.11	0.10
스위스	0.08	0.09
영국	0.08	0.08
터키	0.01	0.07
뉴질랜드	0.05	0.07
한국	0.05	0.07
일본	0.05	0.05
폴란드	0.04	0.03
OECD 평균	0.11	0.13

- 주 1: 순개인소득세(net personal income tax)는 개인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기초현금이전소득(standard cash transfers)을 차감
 2: 누진성지수는 소득수준을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킬 경우, 두 소득집단 간 순개인소득세를 평균의 차이를 소득집단 간 소득차이의 변화로 나누어 산출
 3: 누진성지수는 무자녀 단독 납세자(single taxpayer)를 가정하여 산출
 자료: OECD(2012). 한국조세연구원(2012)에서 재인용.

□ 한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 및 빈곤감소효과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 <표 9>에서 보듯이 OECD 회원국의 경우 조세 및 이전지출로 인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감소된 정도는 평균 31.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4%에 그치고 있어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 조세와 이전지출로 인해 빈곤율이 감소된 정도를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57.7%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3%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수입의 측면에서 조세부담률이 낮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⁹⁾

- 개인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로 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 법인세의 경우에도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다.

- 더욱이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간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전반의 재분배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¹⁰⁾

9)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하향추세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에서 2010년 19.3%로 하락한 이후 2011년 19.8%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24.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0) 한국납세자연맹의 2012년 4월 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4.8%p 증가하였다.

<표 9> 조세·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지니계수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축소비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축소비율
벨기에	0.469	0.259	44.8	31.4	9.4	70.0
오스트리아	0.472	0.261	44.7	28.8	7.9	72.5
핀란드	0.465	0.259	44.3	30.1	8.0	73.4
슬로베니아	0.423	0.236	44.2	25.3	8.0	68.3
체코	0.444	0.256	42.3	25.6	5.5	78.5
헝가리	0.466	0.272	41.6	26.6	6.4	76.1
독일	0.504	0.295	41.5	32.5	8.9	72.5
덴마크	0.416	0.248	40.4	22.1	6.1	72.5
룩셈부르크	0.482	0.288	40.2	26.9	8.5	68.4
프랑스	0.483	0.293	39.3	32.6	7.2	77.9
스웨덴	0.426	0.259	39.2	26.5	8.4	68.5
노르웨이	0.410	0.250	39.0	23.8	7.8	67.3
슬로바키아	0.416	0.257	38.2	24.7	7.2	70.7
이탈리아	0.534	0.337	36.9	33.3	11.4	65.8
폴란드	0.470	0.305	35.1	27.7	11.2	59.5
포르투갈	0.521	0.353	32.2	28.4	12.0	57.9
에스토니아	0.458	0.315	31.2	26.6	12.5	53.2
스페인	0.461	0.317	31.2	27.2	14.0	48.3
네덜란드	0.426	0.294	31.0	24.1	7.2	70.2
그리스	0.436	0.307	29.6	31.1	10.8	65.5
일본	0.462	0.329	28.8	28.7	15.7	45.2
호주	0.468	0.336	28.2	27.2	14.6	46.2
뉴질랜드	0.455	0.330	27.5	22.4	11.0	50.9
캐나다	0.441	0.324	26.5	24.7	12.0	51.2
스위스	0.409	0.303	25.9	19.9	9.3	53.3
이스라엘	0.498	0.371	25.5	27.7	19.9	28.2
영국	0.456	0.345	24.3	31.2	11.0	64.7
미국	0.486	0.378	22.2	27.0	17.3	35.9
아이슬란드	0.382	0.301	21.2	19.0	6.4	66.2
터키	0.470	0.409	13.0	22.0	17.0	22.7
한국	0.344	0.315	8.4	17.5	15.0	14.3
칠레	0.526	0.494	6.1	21.4	18.4	14.4
멕시코	0.494	0.476	3.6	23.6	21.0	11.2
OECD평균	0.457	0.314	31.3	26.3	11.1	57.7

주 1: 가구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4. 세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1) 2008년 경제위기로부터의 교훈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세제개편에 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 Stiglitz(2009)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 추진된 조세체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조세체계의 누진성 약화, 퇴직급여의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이행)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Auerbach(2009)는 개인소득세의 물가연동제(indexation)와 한계세율의 인하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예산규칙의 변화, 재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 제로수준의 명목이자율 등과 함께 재량적 재정정책이 재등장하게 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거부들 또한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 미국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미국의 부자들이 중산층 근로자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면서 부자증세를 주장하였고, 조지 소로스 또한 버핏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 특히 워런 버핏의 주장을 반영하여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적자재정 해소의 일환으로 버핏규칙(Buffett Rule)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민주당은 2012년 2월에 「공정과세법안」(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최소한 30% 이상의 연방실효세율(effective federal tax rate)을 부담해야 한다.

- 민주당의 「공정과세법안」은 금융 및 자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비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다양한 비과세감면혜택의 정리를 통해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 한편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개인소득세의 경우 <표 10>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에서 개인소득세가 하락한 반면,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2008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개인소득세를 각각 10% 포인트와 8.9% 포인트 인상하였고, 덴마크와 폴란드는 동기간에 각각 7.5% 포인트와 8% 포인트를 인하였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2010년 24.1%의 소득세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단계 누진세율(최고세율 33%)을 도입하였다.
 - 법인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세율을 인정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등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다.
 -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그리스, 캐나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각각 5% 포인트, 3.8% 포인트, 3.3% 포인트 낮추었고,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의 경우 동기간에 법인세율을 각각 5% 포인트, 3% 포인트, 2% 포인트 인상하였다.
 -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15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헝가리와 그리스는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5% 포인트와 4% 포인트 인상하였고, 뉴질랜드와 영국은 2.5% 포인트 인상하였다.

<표 10> OECD 회원국의 최고세율 변화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8년	2010년	2008년	2011년	2008년	2011년
세율인상	영국	40.0	50.0			17.5	20.0
	아일랜드	41.0	47.0				
	뉴질랜드					12.5	15.0
	그리스	40.0	45.0			19.0	23.0
	포르투갈	42.0	45.9			21.0	23.0
	스페인					16.0	18.0
	핀란드					22.0	23.0
	아이슬란드	37.2	46.1	15.0	20.0	24.5	25.5
	멕시코	28.0	30.0	28.0	30.0	15.0	16.0
	칠레			17.0	20.0		
	체코					19.0	20.0
	에스토니아					18.0	20.0
	헝가리					20.0	25.0
	이스라엘					15.5	16.0
	폴란드					22.0	23.0
	슬로바키아					19.0	20.0
스위스					7.6	8.0	
세율인하	한국			27.5	24.2		
	영국			28.0	26.0		
	덴마크	59.7	52.2				
	핀란드	50.1	49.0				
	헝가리	36.0	32.0	20.0	19.0		
	이스라엘	46.0	45.0	27.0	24.0		
	뉴질랜드	39.0	35.5	30.0	28.0		
	폴란드	40.0	32.0				
	체코			21.0	19.0		
	룩셈부르크			29.6	28.8		
슬로베니아			22.0	20.0			

주: 최고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OECD, *Tax Database*.

2. 조세제도의 개혁

-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같은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을 극복하면서 세계화,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필요는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함께 복지재정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서비스경제에서 고용증대와 공평한 분배,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일종의 트라일레마(trilemma)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복지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세원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¹⁾
- 더욱이 경기변동성(volatility of economic fluctuations)의 완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 및 빈곤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내수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¹²⁾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를 시정하는 재분배정책의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 Iversen and Wren(1998)은 서비스경제에서 평등과 고용,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일종의 트라일레마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Huber and Stephens(2002)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Bogedan(2008)과 Obinger et al.(2010)에 의하면 덴마크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경제의 트라일레마에 대한 해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Greve(2012)에 의하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국가들도 실제로는 재정건전성보다는 고용과 분배구조의 개선에 치중하였다.

1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강병구(2011) 참조.

-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하여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부조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빈곤층으로 탈락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재정지출의 사회투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재정의 증대가 불가피하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9.2%(잠정치)를 기록하여 2007년의 OECD 회원국 평균(19.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¹³⁾
-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벌대기업과 상위소득집단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함께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
- 첫째,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층 및 재벌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켜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3) 2010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고경환·강기원(2012) 참조.

- 또한 세무감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축소해야 한다.
- <표 11>에서 보듯이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잠정) 29조 7,3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11>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잠정)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97	296,021	297,317
국세감면비율	12.5	14.7	15.8	14.4	13.3	12.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 2011년 말「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설정했지만,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6%(약 3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실효세율에 대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 ▶ <표 12>에서 보듯이 2010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수준인 무자녀 기혼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경우 12.6%로 비교되는 32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표 12> 소득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0년)

(단위: %)

	USD 100,000 기준			USD 300,000 기준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덴마크	41.8	0.2	1.1	51.3	0.1	0.4
헝가리	36.7	11.2	27.0	39.3	8.7	27.0
스웨덴	34.8	4.0	31.4	49.3	1.3	31.4
이탈리아	33.1	9.5	32.0	39.8	10.3	32.0
뉴질랜드	30.6	1.6	-	35.5	0.5	-
핀란드	30.0	7.2	23.1	40.6	7.2	23.1
터키	29.5	5.1	7.4	33.6	1.7	2.5
오스트리아	29.1	14.4	17.5	38.8	4.8	5.8
벨기에	29.0	13.1	35.0	40.7	13.1	35.0
그리스	28.7	16.0	28.1	39.0	5.6	9.8
네덜란드	28.5	11.1	10.5	44.2	3.7	3.5
스페인	28.5	3.0	14.6	38.2	1.0	4.9
포르투갈	27.7	11.0	23.8	36.7	11.0	23.8
캐나다	27.7	2.6	2.8	40.1	0.9	0.9
호주	26.5	1.5	9.0	37.3	1.5	4.4
멕시코	26.5	1.2	-	28.8	0.4	-
영국	24.9	6.6	11.7	38.8	2.9	12.4
이스라엘	24.4	10.8	5.2	37.4	9.2	4.3
노르웨이	24.4	7.8	14.1	34.5	7.8	14.1
아일랜드	22.7	7.6	10.8	38.0	5.9	10.8
에스토니아	20.5	0.0	33.5	20.8	0.0	33.5
독일	20.4	14.4	13.7	35.8	4.8	4.6
슬로바키아	18.0	5.5	1.3	18.7	1.8	5.7
체코	17.2	9.9	30.5	15.7	3.3	10.2
미국	16.6	7.7	7.7	27.9	3.7	3.7
폴란드	15.4	14.1	8.2	20.9	12.2	5.5
칠레	15.1	5.9	1.3	31.3	2.0	0.4
일본	14.1	11.6	-	31.4	5.1	-
프랑스	14.0	20.7	41.4	21.1	18.9	39.5
한국	12.6	5.3	5.5	25.2	4.0	4.2
룩셈부르크	11.6	12.3	12.4	29.3	5.9	5.2
스위스	9.7	6.1	6.1	24.4	5.4	5.8
OECD평균	24.1	8.1	16.1	33.9	5.1	12.6
한국/ OECD평균	52.3	65.4	34.2	74.3	78.4	33.3

주 1: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 비율

2: 실효세율은 무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

자료: KPMG(2010).

- 셋째,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 <표 1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34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이윤 대비 사회보험료 및 급여세 부담률은 13.0%로 OECD 회원국 평균(23.3%)의 55.8%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실효세율은 29.7%로 OECD 회원국 평균(4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넷째,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자본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과세를 근간으로 과세하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 재산과세를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회복하는 세제개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과세체계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3> 법인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0년)

(단위: %)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실효 법인세율 ^{a)}	중소기업 ^{b)}		총실효세율
			실효 법인세율	실효 노동세율	
룩셈부르크	28.6	18.8	4.1	15.1	20.8
칠레	17.0	15.0	18.0	3.8	25.0
아일랜드	12.5	17.5	11.9	11.6	26.3
덴마크	25.0	23.6	20.1	3.6	27.5
캐나다	29.4	26.7	9.3	12.6	28.8
한국	24.2	23.4	15.1	13.0	29.7
스위스	21.2	21.0	8.9	17.5	30.1
이스라엘	25.0	23.8	22.8	5.3	31.2
아이슬란드	18.0	23.3	9.4	18.8	31.8
뉴질랜드	30.0	36.0	29.9	2.9	34.4
슬로베니아	20.0	15.8	14.1	18.2	34.7
영국	28.0	21.4	23.1	11.0	37.3
스페인	30.0	27.0	1.2	36.7	38.7
핀란드	26.0	28.5	13.7	24.2	39.0
네덜란드	25.5	22.2	20.9	18.1	40.5
터키	20.0	20.1	17.9	18.8	41.1
노르웨이	28.0	30.4	24.4	15.9	41.6
포르투갈	26.5	29.2	15.1	26.8	43.3
폴란드	19.0	21.0	17.4	23.6	43.6
그리스	24.0	43.4	13.4	31.7	46.4
독일	30.2	26.7	19.0	21.8	46.7
미국	39.2	29.6	27.6	10.0	46.7
호주	30.0	25.6	26.0	20.4	47.7
슬로바키아	19.0	17.5	7.2	39.6	48.8
체코	19.0	22.3	7.5	38.4	49.1
일본	39.5	39.4	27.0	16.5	49.1
헝가리	19.0	23.0	14.8	34.1	52.4
멕시코	30.0	30.5	24.5	26.8	52.7
스웨덴	26.3	26.3	15.7	35.5	52.8
오스트리아	25.0	23.9	15.0	34.8	53.1
벨기에	34.0	19.6	5.2	50.4	57.3
에스토니아	21.0	22.9	8.0	39.4	58.6
프랑스	34.4	29.3	8.2	51.7	65.7
이탈리아	27.5	40.0	22.8	43.4	68.5
OECD 평균	25.6	25.4	15.9	23.3	42.4
한국/OECD 평균	94.5	92.1	95.0	55.8	70.0

주 1: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실효법인세율(a)은 OSIRIS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중소기업(b)의 조세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한 자료

2: 총실효세부담율은 기업이윤 대비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와 강제기여금의 비율
 자료: Bureau Van Dijk, OSIRIS, 2012;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2011.

5. 조세정책의 비전과 전략

- 경제민주화는 생산, 교환, 소비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회의 균등, 절차상의 민주화,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으로서의 조세정의(tax justice)는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보다 큰 틀에서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과세행위까지도 포함한다.
-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이는 곧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 및 재정체계를 복지국가 시대의 조세 및 재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복지국가지대의 조세 및 재정체계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곧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한 내수기반을 극복하는 합리적 대안이기도 하다.
- 취약한 복지현실과 역진적인 과세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율 적정 세율’로 설정하고, ‘先공평과세 後보편증세’를 증세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정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2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한국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 강병구,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2011.
- 강병구·성효용,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0집 제3호, 2008.
- 경제개혁연구소, “회사기회비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 『경제개혁리포트』, 2011-4호, 2011.
- 고경환·강기원, “복지재정의 현황과 이슈”, 『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2, 한국재정학회.
- 곽태원·이병기·현진권,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 조정 토빈q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4집 제2호, 2006.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2호, 2007.
- 김유찬·김진수, “법인세 감면과 경기활성화”,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2004.
-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호, 2004.
- 노준화, “조세혜택의 측정방법과 내재적 조세”,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02.
- 신현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

- 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 윤영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윤재·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한국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986-1997”, 『산업경제연구』, 제17집 제5호, 2004.
-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2006.
- 조윤제·박창귀·강종구,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2012.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5호, 2012.
- 최장집, “민주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조건과 함의”, 『당대비평』 3(봄호), 1998.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1호, 2012.
- Auerbach, A., “Implementing the New Fiscal Policy Activism”,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9(2), 2009.
- Bogedan, C., “Mehr als Flexicurity: Lehren aus der danischen Arbeitsmarktpolitik”, in H. Seifert and O. Struck (eds.): *Kontriverson um Effizienz und Sicherhei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8, 267-85.
- Greve, B. (ed.), *The Times They are Changing?: Crisis and the Welfare State*, Wiley-Blackwell, 2012.
- Huber, E. and J. D. Stephens, “Globalis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Democratic Model”, *Social Policy and Society*, 1(1), 2002.
- Iversen, T. and A. Wren,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 1998.

- KPMG,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0*, 2010.
- Murphy, L., and T. Nagel, *The Myth of Ownership: Taxes and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Obinger, H. et al. *Transformations of the Welfare State: Small States, Big Les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2.
- Stiglitz, S., "The Global Crisis, Social Protection and Job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8(1-2), 2009.
- Wilkie, P. J.,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1992.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토 론 문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경제정책과 민주당’ 간담회 토론문

윤원배

1. 역대 정권 중 가장 지지분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지 못하고 절대 질 수 없고 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왜 정권탈환에 실패하였는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의 결여가 정권탈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
-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잘못

2.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 과연 그들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였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까?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점은?
-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 -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공? 설 -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2004년 외환평형기금 적자 10조원 - 수출지원 고환율 재벌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결과
-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왜 노무현정부의 실정이 아닌 이명박정부의 실정인가?
 - ◆ 한미FTA추진과정 - 공청회
 - ◆ 제주해군기지건설 - 보고절차 잘못

- ◆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관료들에 포획되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
 -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관료의 한계
- 노무현 정부 참여 세력이 정직하지도 참신하지도 유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판단

3.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 슬로건 - 새누리당만 어부지리
- 경제민주화는 추상적 개념 - 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중요
- 어떤 사회체제가 공정한가? 매우 어려운 주제-롤스의 무지의 장막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
- 경제민주화 ->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 정책방향의 불안정성 노출
- 경제민주화가 관련 경제주체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
 - ◆ “경제문제를 1인1표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겠다”
 -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 연상
 - ◆ 재벌개혁문제, 노사문제, 일자리문제, 양극화문제, 서민금융문제, 복지확대의 문제 - 1인1표제로 해결?
-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미숙과 후진성의 발로
-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데 실패 -> 경제민주화 요구로 분출
- 재벌개혁 - 재벌들의 횡포
 - ◆ 정치권력, 관료집단, 기타 권력집단들의 방조 묵인 비호 지원에 의한 결과

- ◆ 재벌을 비호하는데 역대정권 간에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4. 국가정책의 목표 -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3대요소

- ◆ 시장경제 -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능력 확대
- ◆ 민주주의 -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 ◆ 사회보장 - 인간다운 삶의 보장

○ 사회보장의 확대가 복지국가인가?

- ◆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이 가장 잘 확보된 체제 - 공산주의
- ◆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
- ◆ 과도한 사회보장?
- ◆ 민주주의의 실종, 독재가 부른 필연적인 결과
- ◆ 공산주의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실종 - 자생적 수정능력 결여
- 효율성 상실

○ 시장경제와 사회보장확대간의 갈등?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세력 간의 갈등

- ◆ 민주정치에 의해 조정되어야 지속적인 복지국가 실현 가능

5.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발생의 원인

- ◆ 신자유주의?
- ◆ 1989년의 베를린장벽 붕괴, 1991년의 소련해체
- ◆ 공산주의 몰락,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
- ◆ 30억 이상 노동력의 국제경쟁시장 참여 - 세계적인 공급과잉,

수요부족

- ◆ 실업증가 - 양극화심화 - 수요감소 - 실업증가의 악순환 => 세계적인 현상
- ◆ 효율성증대,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문제해결 난망
- ◆ 고용증대와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이루어야

6. 경제정책의 방향

-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 ◆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창출
 - 년 간 2100시간 이상의 장기근로 과로체제탈피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내수부족,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생산능력확대, 노령화시대, 복지비용부담, 비정규직문제
- 우리에게선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아울러 행복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필요

7. 민주당

- 정체성 혼란
 - ◆ 서민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99%의 국민을 위한 정당
 - ◆ 약자를 대변하되 국민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 왜 부자는 제외되어야 하는가?
 - ◆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며 존경받는 부자도 있다.

- 숫자의 함정
 - ◆ 극우, 극좌만 해도 2%이상
 - ◆ 너무 포괄범위가 넓음. - 정책방향에 집중성이 없고 정치와 정책 행태가 오락가락 하는 이유
- 서민층과 중산층 대변

•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토 론 문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중도진보의 국가비전과 경제정책: 민주당의 강령· 정책과 관련하여

2013.04.05.

이일영(한신대 교수)

개요

- 중도진보의 현실 인식
- 중도진보의 비전과 이념
- 중도진보의 시스템과 정책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12, [한국형 네트워크국가의 모색], 백산서당.
- 이일영, 2009,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 경제], 창비.

민주당의 현실인식

민주당

-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 양극화/기득권/환경파괴, 중산층/서민경제, 실업/비정규직, 청년/교육, 저출산/고령화
- 남북관계 단절 및 한반도 평화 위협

새누리당

- 대외적: 전세계 차원의 불확실성 증대
- 대내적: 국가발전-국민행복 간 간극 확대, 성장(정체/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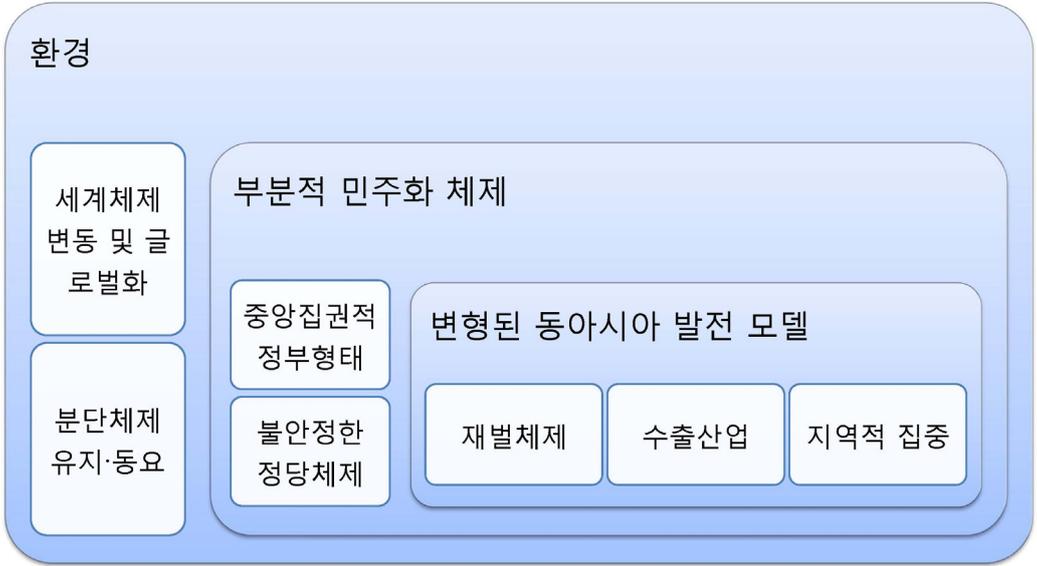
통합진보당

-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 강대국 패권주의: 전쟁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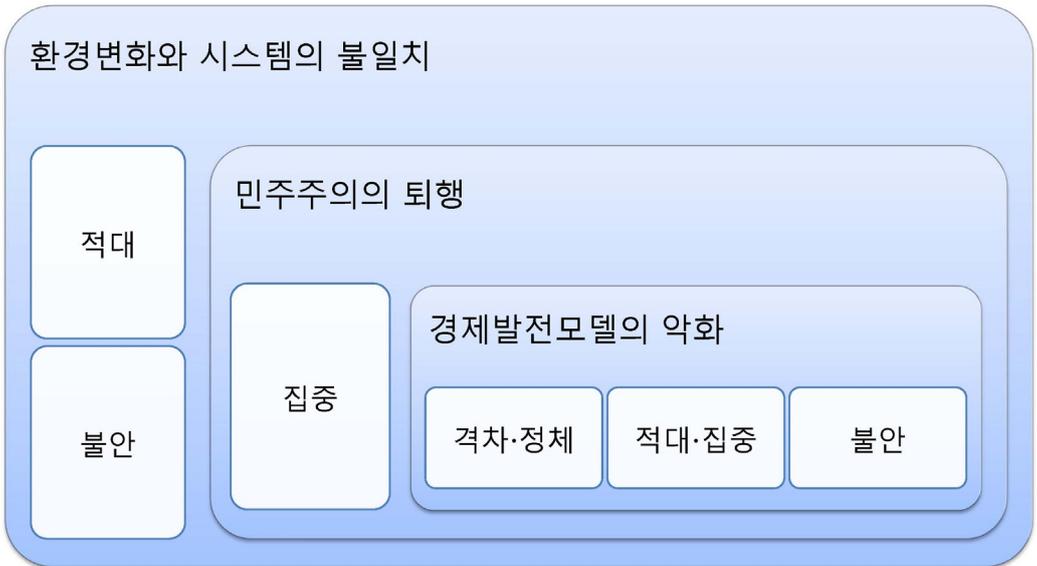
현실의 외부환경: 카오스 증대



내부구조: 87년체제



현실 진단: 위기적 현상



민주당의 이념과 비전

민주당

-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
- 경제민주화 실현
-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

새누리당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
- 국민행복 국가
- 조화와 통합

통합진보당

- 민중이 진정한 주인
-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

중도=진보의 개념

-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 vs 방향이론(directional model)
- 원가우위전략(overall cost leadership strategy) vs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
- 동아시아 전통에서 중도는 공간적 기준이 아니라 문명적 기준
- “중(中)은 천하의 큰 근본(희로애락 이전의 본성), 화(和)는 사람들이 달성해야 할 길”

중도진보의 이념 분포

유권자의 세력 분포(Dalton)

	기존 정당 불신	기존 정당 지지
인지 능력 높음	인지적 무당파 층	인지적 정당지 지층
인지 능력 낮음	정치적 무관심 층	관습적 정당지 지층

18대대선 유권자 인식(EAI)

- 박근혜 승리 요인: 야권단일화가 잘 안돼서(50.1%), 민주당이 잘못해서(18.2%), 박이 잘해서(15.4%), 문이 잘 못해서(4.7%)
- 선거 승패의 이슈: 안의 사퇴 및 문 지원'(32.9%), 이정희 TV토론(15.0%), 국정원 여직원(8.1%), 박정희 친일 논란(4.9%), NLL 녹취록 공개논란(4.4%)

중도진보의 시스템 원리

- 시장(market) : 독립적 행위자간 교환관계
- 위계(hierarchy) : 행위자들 상위에 권위체
- 네트워크(network)
 - 시장·위계 사이의 **혼합적(hybrid) 조직**
 - 핵심요소 1)반복적·지속적인 관계 2)정보의 공유·확산 3)자발적(윤리적) 제재 가능
 - 협력행동의 조직화**라는 결과를 기대

네트워크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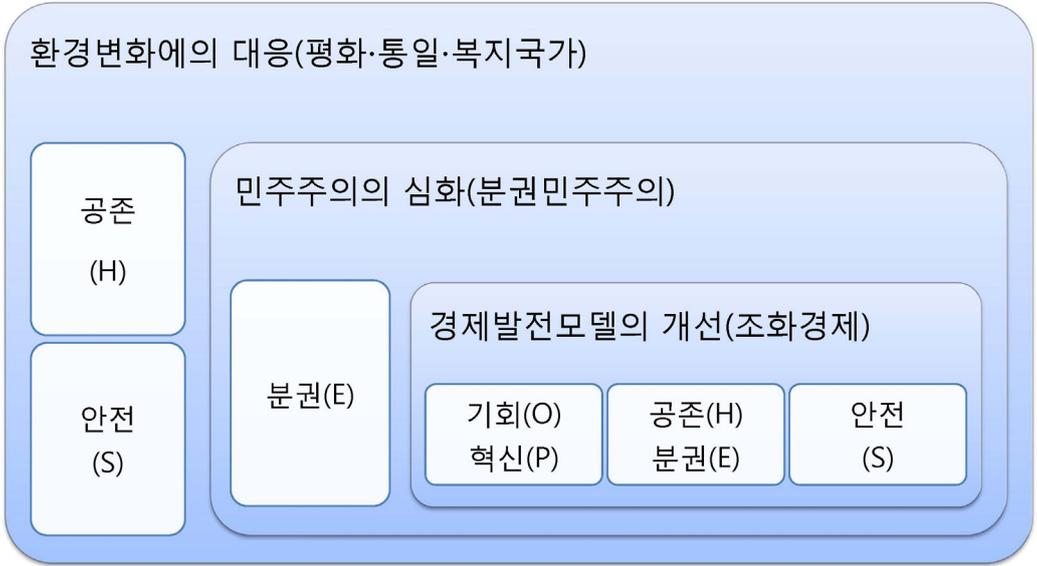
- 개입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집합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임
- 국가는 네트워크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협력적 행동을 유도할 필요
- 정부와 정책은 네트워크 원리의 확산의 기반을 제공: 네트워크적 가치(HOPES)에 입각한 규칙과 규범의 형성을 유도

중도진보 네트워크국가로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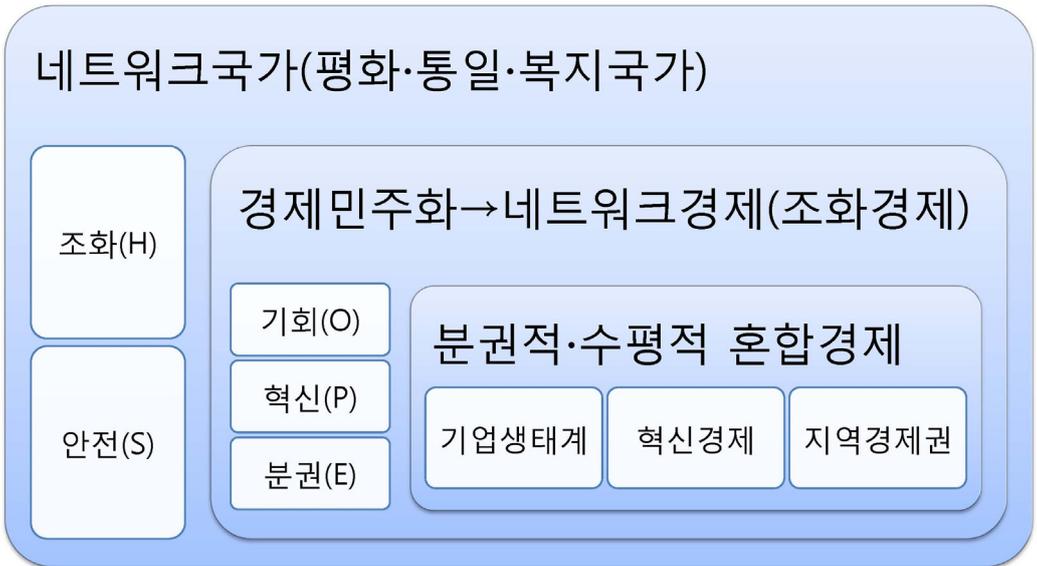
네트워크국가의 모델

환경변화에의 대응(평화·통일·복지국가)



네트워크국가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국가(평화·통일·복지국가)



네트워크경제의 가치와 의제

공존(H)	기회(O)	혁신(P)	분권(E)	안전(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연대• 국제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생태계• 녹색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경제권• 시민참여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통일• 서민생활 안정

•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4)

토 론 문

- 이인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